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841

발의연월일: 2024. 8. 14.

발 의 자:김예지・임종득・최수진

강대식 · 김도읍 · 김대식

김선교 • 백종헌 • 서천호

주호영 · 김소희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3·1절에 세종시의 한 주민이 국기 대신 일장기를 게양하거나, 2024년 현충일에는 부산시의 한 주민이 욱일기를 게양한 사례 등우리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에 다른 나라의 국기를 게양하여 국민갈등을 야기하고 그릇된 역사인식을 갖게 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국경일, 현충일 및 국군의 날, 국가장기간 등에는 국기를 게양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다른 나라 국기의 게양을 제한하는 내용은 없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빈 방한행사, 국제경기·국제회의, 주한외국공관에서의 다른 나라 국기 게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국기를 게양하 여야 하는 날에 다른 국가의 국기를 게양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임 (안 제13조 신설).

법률 제 호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국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다른 국가의 국기 게양금지)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에 다른 국가의 국기를 게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빈 방한행사, 국제경기·국제회의, 주한외국공관(대사관과 영사관을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3조(다른 국가의 국기 게양금
	지)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에 다른 국
	<u>가의 국기를 게양하여서는 아</u>
	니 된다. 다만, 국빈 방한행사,
	국제경기・국제회의, 주한외국
	공관(대사관과 영사관을 포함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